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1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석엔지니어링(배정석),
②(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송명기)

나. 전화번호 : ①02-416-5571 ②042-670-3135

2. 명칭 : 시공환경에 대응한 건식, 습식 전용 피막층과 수동, 자동 분사장치를 선택하여 원형 중공입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 (Velox U-Coat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시공환경에 대응하여 바이오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식 일반전용 피막 도포층과 세라믹 결합수지 구성의 고습도 전용 습식 피막층을 선택적으로 적용 후, 현장조건에 맞추어 전기식제어 수동분사장비, 자동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원형중공 입자형 혼합 재생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이다. 특히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코트에 선택적 피막 도포층과 장비를 적용함으로써 시공 성능과 일체성을 향상하였으며 방수층의 열전달 저감 기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신청기술은 바이오폴리올 복합 건식전용 피막재 또는 세라믹 혼합 습식전용 피막재를 도포 후 폴리에스터폴리올 실리케이트계 원형중공입자로 구성된 벨록스 유 코트를 수동.자동 분사장비로 선택하여 시공하는 일체적 도막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 - 91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 및 시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를 별도로 배치하는 등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거시설에 근접하여 공동육아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함.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해 건축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으로 확대함.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적용 건축물 및 역량 있는 건축사의 증가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하는 신기술로 한정하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최근 5년이 내 건축설계 공모에 입상한 자로 한정함.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관련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함.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